

문서번호	인재개발원-1332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6.04.07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이사장 방침 제 119호

★과장	팀장	인재개발원장	경영전략본부장	이사장
협 조				

성희롱 예방 및 장애인 인권 마인드 함양 등
2016 인권침해 없는 조직문화 조성 계획

2016. 4.

성희롱 예방 및 장애인 인권 마인드 함양 등

2016 인권침해 없는 조직문화 조성 계획

I. 추진개요

- 분야
 - ┌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, 언어폭력 예방
 - └ 장애인 인권, 인권 증진 * 분야별 근거법령 참조

인권 관련 대내외 환경

대외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양성평등 실현 및 실질적 인권교육 필요 (서비스직 운전업무 종사자 장애체험 등)
대내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여직원 비율 확대 추세 ▶ 인권 침해 없는 조직 분위기에 대한 대내적 요구 강화
기관 의무 (평가 대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개별 관계 법령 및 서울시 조례 등에 의거 연간 실시 회수 지정 ▶ 각종 평가 관련 전략적 대응 및 확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영평가 지표 : 책임경영구현 > 경영혁신 현안 추진노력 (가중치 2) 실질적 성평등 구현을 위한 노력 : 임직원 대상 성주류화 및 성인지 교육 연 2회 - 서울시 2015 경영혁신 공통과제 평가실사 시 권고사항 :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외부전문가 교육으로 연 2회 이상 실시

2016년 추진방향

-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 의식 함양 (Bottom-Up)
 - 기관 의무 교육 확행 및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교육, 신고 채널 확대
- 인권 보호 의식 확대 (Cascading) : 관리자 대상 교육, 부서장 다짐·선서
- 건강한 조직문화 유지를 위한 일상적 예방 홍보 추진 : 홍보 인프라 활용

분야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
성희롱 예방	부서장 전달 교육 관리자 대상 교육	정례조례 전직원 전문교육	부서장 전달 교육
성매매, 성·가정·언어폭력 장애인 인권	부서장 전달 교육 부서장 전달 교육	←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 교육 →	부서장 전달 교육 부서장 전달 교육
인권		← 찾아가는 인권 교육 →	

II. 추진계획

□ 인권 마인드 교육

① 의무 교육 실시

※ 성주류화 및 성인지 교육내용 포함

- 관련근거 : 개별 관계 법령, 서울시 조례 및 방침에 의함
- 교육대상 : 전직원 — 기간제, 파트타이머, 공익근무요원 포함
- 실시회수 : (연 2회) 성희롱 예방, 장애인 인권 (연 1회) 그 외 분야
- 교육방법 : 전문강사 교육 및 부서장 전달교육 (교육자료 제공)

☞ 관리자의 인권 실천 의지 고양

- ▶ 부서장, 팀장 대상 집체 교육 실시 : 핵심가치토론회 등(전문강사 활용)
- ▶ 부서장 인권 보호 다짐 및 선서 : 4월, 10월 — 성희롱 예방 전달 교육시

☞ 서비스직 운전원 인권 교육 실시 (임용교육 시 등)

- ▶ 「장애체험」 및 「찾아가는 인권교육」 등 고객을 이해하고
직원간 존중하는 문화 조성

② 권리 의식 함양 교육

- 대 상 : 성희롱 및 인권에 대한 상대적 취약 계층 - 신입, 공무원
- 방 법

- (신 입) 임용시 예방 교육 실시 및 집체교육 곤란시 사이버 교육 대체
- (공무직 등) 전문 교수의 「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」 실시

교육대상에 맞게 성희롱의 개념 및 신고방법 등 알기 쉽게 전달

□ 각종 홍보 인프라 활용을 통한 일상적 예방

- 전자결재 팝업 창 생성 : 성희롱 예방 문화 관련 팝업 게시
 - 체련 대회 기간 및 매월 마지막 주 — 성희롱 예방 관련 문구, 이미지 등
- 청사 내 홍보 모니터에 영상 게시
 - 인재개발원 모니터, E/V 모니터 등

III. 행정사항

공단 성희롱 예방지침 및 매뉴얼 현실화 (일부 개정)

- 개정사유 : 예방지침 및 매뉴얼의 상충 조항 개정, 현실화
- 주요내용
 -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수정 (매뉴얼 4쪽, 지침 11조)
 - : 교육 소관부서 본부장 (←경영지원본부장), 홍보마케팅실 (←미래전략실)
 - 공단 규정 및 예방지침, 매뉴얼과 상충 부분 수정 (지침 5조)
 - : 고충전담창구의 업무 일부 수정 ☞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의뢰 및 처리

성희롱 고충상담 창구의 실무 적응력 배양

-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(인재개발원) : 사건 상담 및 고충 접수, 처리
- 성희롱 고충상담 실무 능력 배양 : (女) 000, (男) 000
 - 보수교육 수강 (한국양성평등진흥원 전문교육) : 5월중
- 외부 전문 심의위원 지속 유지 : 000, 000 (2017. 5.13 까지)

분야별 근거 법령 등

구 분	성 희 롱	성 매 매	성 폭 력	가정폭력	언어폭력	장애인 인권	인권증진
관련법 (제도)	양성평등기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	상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	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	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	행정1부시장 방침 제302호 (2104.9.29) 성희롱안팎 재발방지 대책	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	서울특별시 인권기본 조례 제10조

따로붙임 : 2015년 추진실적, 성희롱 예방지침, 사건처리 매뉴얼 각 1부.